

<p>투자위험등급 :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p>	<p>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개인 MMF1 호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개인 MMF1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개인 MMF1 호 (11120)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02-6950-0000)
4.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홈페이지 참조
5. 작성기준일 : 2014년 1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2월 2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총액: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안전성을 강화한 운용을 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합니다.
 -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어음,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등을 활용합니다.
- 펀드의 유동성을 고려한 운용을 합니다.
 - 투자기간이 짧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매경 BP CaII 100%

나.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별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시가과리율을 점검하여 허용수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한도 이내에서 운용되는지 점검하여 금리위험을 통제합니다. 또한 신용등급별, 발행자별, 업종별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유동성위험에 대해서는 유동성제약자산 비중 및 환매에 대비한 가용현금 비중을 점검·관리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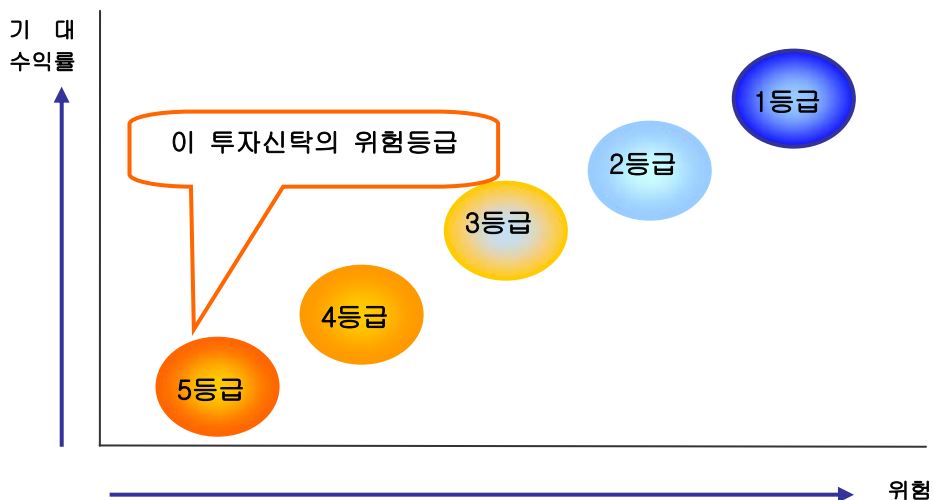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5단계[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중간 위험(3등급), 낮은 위험(4등급), 매우 낮은 위험(5등급)]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위험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을 인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4년 2월 21일)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오현세	1964	본부장	81개	83,668억	-부산대학원(경제학) -현대투자신탁증권(6년 9개월) -한화자산운용(1998.3~현재)
부책임 운용 전문인력	박하나	1980	매니저	-	-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 BS투자증권 (2년 4개월) - SK증권 (1년 1개월) - 알파에셋자산운용(6년 2개월) - 한화자산운용(2014년 2월~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은 FI사업본부가 팀제로 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과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고,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기준일(2014년 2월 21일)에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는 기재가 불가능하여, 운용을 담당할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2014년 2월 17일 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펀드 수	운용규모
오현세	5개	4,764억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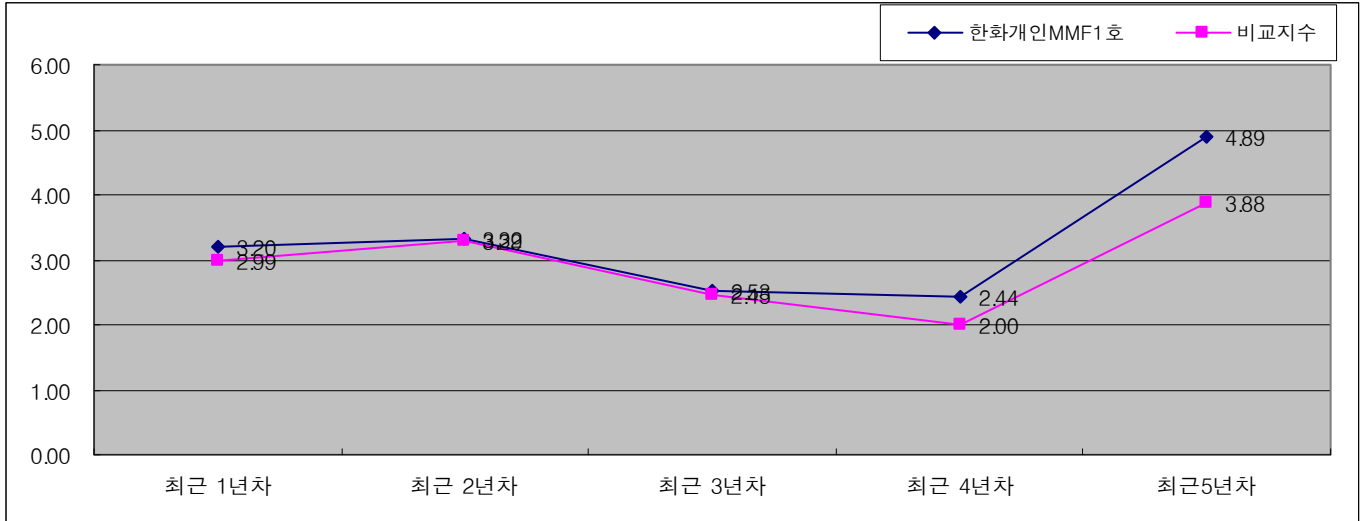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4.02.21	윤세정	박하나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5.01 ~13.04.30	11.05.01 ~12.04.30	10.05.01 ~11.04.30	09.05.01 ~10.04.30	08.05.01 ~09.04.30
한화개인 MMF1 호	3.20	3.32	2.53	2.44	4.89
비교지수	2.99	3.29	2.45	2.00	3.88
한화개인 MMF1 호 종류 A-u2	2.84				

비교지수	2.96				
한화개인 MMF1 호 종류 C	2.79				
비교지수	2.99				



(주 1) 비교지수 : 매경 BP Call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u2	제한 없음 종류A-u2 수익증권간 전환권	1.0% 이하 ¹⁾	-	-	-
C	제한없음	-	-	-	-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 금지축계좌”의 가입	-	-	-	-

	자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3년미만 환매시 0.15% 이내 ²⁾	-	-
부과기준		납입금액	환매금액	-	-

주1) 종류 A-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다.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총 보수·비용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A-u2	0.1065	0.20	0.025	0.01	0.0045	0.3460	0.0033	
C	0.1065	0.2485	0.025	0.01	0.0049	0.3949	0.0028	
C-P	0.1065	0.140	0.025	0.01	-	0.2815	-	
S	0.1065	0.100	0.025	0.01	-	0.2415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주1 참조)	-	사유발생시 (주2 참조)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2012.2.09-2013.2.08)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2.2.09-2013.2.08)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u2	135	212	296	546
종류 C	40	128	224	509
종류 C-P	29	91	159	363
종류 S	25	78	137	31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류 A-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를 1.0%로 가정) 및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4) 종류 C-P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수령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금계좌의 평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 - 연금수령연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able> <p>*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함</p>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400만원 한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p>연금소득세 5.5 ~ 3.3%(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이(연금수령일 현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율(지방소득세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5세 이상 70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세 이상 80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r> </table> <p>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p>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기준가격 산정주기/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 매입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납입: 자금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납입한: 자금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다) 자금을 납입한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환매

-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 지급하는 경우
-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판매회사는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별로 그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A-u2수익증권의 전환에 의한 환매와 관련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유의사항

-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환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투자신탁의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내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5기	제 14기	제 13기
	(2013.02.08)	(2012.02.08)	(2011.02.08)
운용자산	171,929,820,279	201,094,251,604	245,433,450,930
증권	119,897,225,357	135,469,165,434	205,129,820,12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2,032,594,922	65,625,086,170	40,303,630,80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75,240,247	1,664,452,833	1,560,098,342
자산총계	172,705,060,526	202,758,704,437	246,993,549,27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107,853,636	128,018,813	140,047,660
부채총계	2,107,853,636	128,018,813	140,047,660
원본	165,687,891,636	0	0
수익조정금	-582,687,054	0	0
이익잉여금	5,492,002,308	202,630,685,624	246,853,501,612
자본총계	170,597,206,890	202,630,685,624	246,853,501,612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5기	제 14기	제 13기
	(2012.02.09 - 2013.02.08)	(2011.02.09 - 2012.02.08)	(2010.02.09 - 2011.02.08)
운용수익	6,240,155,223	0	0
이자수익	6,342,055,646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01,900,423	0	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709,675,088	785,255,434	1,008,980,679
관련회사 보수	709,675,088	785,255,434	1,008,980,67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8,474,100	30,734,690	65,414,807
당기순이익	5,502,006,035	-815,990,124	-1,074,395,48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한화개인MMF 1호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하신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개인MMF 1호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20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